

분과위원회 설치(안) 회의자료 - ③ 사법정책분과위원회

1.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

- 사법행정의 주요 기능과 역할 중 하나로서 사법부의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어느 기관 또는 조직이라도 중·장기 정책을 미리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어려움
 - 종래 법원행정처에는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법원행정처의 규모 축소와 탈법관화 과정에서 ‘사법지원실’로 통합되어 사법지원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의 축소 및 탈법관화와 발맞추어, 분과위원회로서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사법부의 중·장기 정책 관련 연구·검토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2.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설치 시 위원 구성 방안

- 위원 구성 방안 ⇨ 내부위원(법관, 법원공무원), 외부위원
 - 법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법원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 규칙 제8조제6항(“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에 따라 위원 구성 시 공개적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 신청 또는 추천의 이유(전문성, 그 동안의 경험 등)를 요청함으로써 위원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음
 - 후술하는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 논의 안건의 특성상 ‘전문법원 소위원회(가칭)’, ‘장애인 사법지원 소위원회(가칭)’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다만, 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운영세칙에서 별도의 정함이 필요함)
- 간사 지정 방안
 -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법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지원심의관을 지명하거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과 사법지원심의관을 공동 간사로 지명하는 방법 등이 가능함

3. 사법정책분과위원회 부의·회부 예상 안건 설명

1.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 논의의 필요성

- 사회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으로 분화된 여러 영역의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각 영역의 법률분쟁이 각기 특수한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점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짐
- 법원은 지금까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전담재판부를 설치, 운용하는 등 전문성의 확보와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노력하여 왔으나 전담재판부만으로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전문법원의 설치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전문법원이 새롭게 설치되기도 하였고 일부는 폐지되기도 하였음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문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폐지된 전문법원: 형사법원(1963년 서울지방법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됨)
- 종래 우리나라에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전문법원 유형
 - 조세법원, 노동법원, 해사법원, 상사법원, 교통법원, 문제해결법원 등
 - 2015. 6.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국제거래·증권·언론·해사사건과 같이 담당 법원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특정 법원에 사건 처리를 집중시키기에 적절한 규모의 접수 건수가 확보되는 특정 전문분야 사건을 중심으로 특성화 법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음
- 비교법적 참고자료
 - 독일: 행정법원, 재정법원, 사회법원, 노동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음

- 프랑스: 크게 행정법원과 사법법원으로 나뉘어 있고, 사법법원 내에서도 상사법원, 노동법원, 사회보장법원, 형사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미국: 조세법원, 파산법원, 청구법원(Claim Court), 국제거래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일본: 가정법원(가정재판소) 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간이재판소는 특정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아님)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논의 필요 사항

- 전문법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 여부(전담재판부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과의 비교 검토)
- 전문법원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 순위(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독립된 법원을 설치할 정도의 사건 수 여부, 법관 충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설치 가능 지역 및 시기 등

②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

■ 논의의 필요성

- 사법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임
- 헌법의 기본이념이 장애인에 대한 재판절차에 투영될 수 있는 구체적·실천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법부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이행 여부에 대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3차 국가보고서 심사가 2020년 초에 예정되어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비하기 위해 2012년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함
 - 2013. 7.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의 단계별 지원 방안을 담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

한 가이드라인」 발간하였음

●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9. 4. 제8차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도 사법서비스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등을 통한 통역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 **2기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 구성 등**

- 2019. 2. 장애인 관련 법률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활동가 및 법관으로 구성된 2기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을 구성
- 현재 연구반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등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과 함께 ‘법률용어수어집’ 발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발주하여 진행 중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현실적인 여건(예산 및 인적·물적 시설 부족) 개선이 뒤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논의 사항**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방안 마련(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있음)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제공 등 판결문제공서비스 개선
- 그 밖에 사법행정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제도적, 규범적 개선 방안

③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사법정책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사전 검토**

● **사법지원실 소관 사법정책 관련 주요 대법원규칙 등**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원칙,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예규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 국민이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판결문 제공 업무 처리 등을 정한 예규
- 해외사법자료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규
 - 해외연수,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하여 입수한 해외사법정보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규
- 위에서 제시한 규칙 이외에 사법정책과 관련한 규칙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의 회부에 따라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